#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1. 10. 27.(목)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1년 10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10월 26일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성수)

#### 가. 제안이유

-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 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사무기능직 공무원이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924명 → 2,928명(+4)

####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 반 직 : 1,077명 → 1,099명(+22)

·일반직 4급 : 58명 → 59명(+1)

· 일반직 5급이하 : 1,009명  $\rightarrow$  1,030명(+21)

- 기 능 직 : 239명 → 221명(△18)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손자용)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의 전환을 위하여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이하 3명 등 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2,924명에서 2,928명으로 증원하고,
- 일반직 정원을 증원된 4명과 사무분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정원 18명을 포함하여 1,077명에서 1,099명으로 증원하며 이에따라 기능직 정원을 239명에서 221명으로 18명 감원하는 것임.

금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증원과 「지방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공 무워 정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된 일반직 공무원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1			I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2,928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099			-			
2~3급	1		1				
3급	8	7		1			
3~4급	1	1					
4급	59	40	7	4	7	1	
5급이하소계	1,030			-			
별 정 직 계	20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19			-			
연 구 직 계	139			-			
연 구 관	22	1		19	2		
연 구 사	117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382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372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21			_			

<sup>※</sup>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0 0	직목 (	사 출 업 장 소 소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식목  기과	사 출 업 장 소 소
총 계	<u>2,924</u>					총 계	<u>2,928</u>				
:						:					
일반직계	1,077	-			일반직계	1,099		-			
:						:					
4급	<u>58</u>	7	4	<u>6</u>	1	4급	<u>59</u>	7	4	7	1
5급이하	1,009	-			5급이하	1,030	-				
:						:					
기능직계	<u>239</u>					기능직계	221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 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본청 ·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⑤ (생략)

# 인건비 비용추계서

□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2,924명 ⇒ 2,928명 (증 4명)

○ 일반직 +4명 : 4급 이상 +1명, 5급 이하 +3명

□ 추가 소요 비용: 225,484,710원

(단위:원)

		(인커:전)
구 분(예산과목)	추가 소요비용	비고
총 계	225,484,710	*총액 1인기준액 6,200만원
∘인건비	177,810,510	
- 기본급	133,034,400	
- 수 당	28,706,340	
- 정액급식비	6,240,000	
- 명절휴가비	6,651,720	
- 연가보상비	3,178,050	
∘물건비	8,220,000	
- 직급보조비	8,220,000	
•이전경비	39,454,200	
- 성과상여금	8,915,200	
- 연금부담금	11,181,000	
- 보전금	11,510,000	
- 퇴직수당부담금	3,724,000	
- 국민건강보험금	4,124,000	